

## 나. 징계 등 기록 말소

1) 관련 규정: 국가공무원 복무 · 징계 관련 예규

2) 총 칙

가) 목적

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.

나) 제도의 근거

「공무원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」(이하 ‘규정’이라 함) 제9조

다) 적용범위

본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예규시행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중인 자이나,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됨

라) 말소대상기록

(1) 징계기록

(가) 규정 제9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,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카드 ‘징계 · 형별’란에 등재된 강등 · 정직 · 감봉 · 견책을 말함.

(나) 다만,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 ·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.

(2) 직위해제기록

규정 제9조제2항의 직위해제는 「국가공무원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동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(‘인사기록’)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.

(3) 불문경고기록

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 ‘비고’란에 기록되는 바,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.

마) 말소제한기간

(1)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 기한은 다음과 같음

| 처분     | 강등 | 정직 | 감봉 | 견책 | 직위해제 | 불문경고 |
|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|
| 말소제한기간 | 9년 | 7년 | 5년 | 3년 | 2년   | 1년   |

(2)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,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\* 퇴직자의 경우는 예외

(가)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

(나) 법 제71조제1항제3호·제5호·6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